

「하나 사학연금평생안심통장」 특약

제 1 조 약관의 적용

하나 사학연금평생안심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예금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

제 2 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정하는 연금급여(이하 "사학연금"이라 함)를 수령하는 실명의 개인으로 한하며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합니다.

제 3 조 예금과목

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저축예금으로 합니다.

제 4 조 이자지급

- ①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예금의 이자는 해당 기준일(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제3금요일)에 계산하여 기준일에 이은 익일(이하 '원가일'이라 한다)에 원금에 더합니다.
- ② 제1항의 예금이자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 계산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하는 이율로 계산합니다.
- ③ 이 예금의 가입자가 이 예금에서 적립식 예금을 매월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납입시 또는 [하나카드사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이용대금을 매월 30만원 이상 결제한 경우 원가일에 (연 0.3%)의 우대이율을 ②항의 고시한 이율에 더하여 계산합니다.

제 5 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이 예금으로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당월에 사학연금이 입금된 경우,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대하여 다음 각항의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가입일로부터 익월말일까지는 사학연금이체와는 상관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① 수수료우대서비스 대상거래 I (총합 월100회 면제)
 1.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2.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이체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3. 폰뱅킹(ARS)를 통한 타행이체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4. 인터넷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5. 모바일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6. 납부자이체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 ② 수수료우대서비스 대상거래 II (총합 월10회 면제)
 1. 창구에서 당행이체 및 타행이체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2. 폰뱅킹(상담원)을 통한 당행이체 및 타행이체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3.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 인출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타행은 CD공동망 참여하는 금융회사로 타행점내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한해 서비스가 제공 됩니다. 은행 외부장소에 설치된 타행제휴 CD기 및 한컴/효성/나이스 등 VAN사 CD기에서 출금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 6 조 입금제한

- ① 이 예금으로의 입금은 법령에 따라 제2조의 가입대상에게 지급되는 사학연금에 한하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0조 2항,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이하 “관련 법령”이라 함)에서 정하는 사학연금 수급자 보호금액(이하 “보호금액”이라 함)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단, 통장의 잔액은 금액에 제한없이 유지가 가능하며 입금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② 매월 입금되는 사학연금 급여액이 제1항의 보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호금액까지만 이 통장으로 입금되며, 초과한 금액은 입금이 제한되지 않는 별도의 통장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호금액이 변경될 경우 입금한도도 이에 맞추어 변경됩니다.

제 7 조 거래제한

- ① 이 예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어 있고, 만약 이 예금에 대하여 법원의 압류명령이 있을 경우 은행은 그 압류명령에 따라 예금의 지급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② 이 예금은 은행이 상계할 수 없습니다.
- ③ 이 예금은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등 담보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 ④ 이 예금은 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기본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⑤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 결제금액 또는 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취소 또는 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제6조의 입금제한(입금은 사학연금 급여에 한함)에 따라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결제금액 또는 납부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부 칙

1. 이 특약은 2021년 6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2. 이 특약은 2021년 6월 8일 개정일부터 기존 가입자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